

# 忠清北道議會事務處 專門委員 資格에 관한 規定

第1條(目的) 이 規定은 地方自治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하고 議회의 專門委員 任用協議會  
그 資格標準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專門委員으로 하여금 委員會 業務를 國體에  
補佐할 수 있도록 함을 目的으로 함.

第2條(資格標準) 專門委員은 다음 各號의 資格標準에 該當하고, 職務에 必要한 事前知識을  
가진 者로 한다.

## 1. 一 般 職

- 가. 地方 4級 公務員으로 在職中인 者
- 나. 道 本廳 및 外廳 課長級으로 在職중인 者
- 다. 가, 나항에 該當되는 者로서 滿 55세 以下인 者  
단, 議장과 協議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 2. 別 定 職

- 가.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5級 以上 公務員으로 5年 以上 勤務하였거나  
同等한 資格을 가진 者
- 나. 地方議會議員 4年 以上 經歷이 있거나, 委員會關聯 業務分野 政府投資機關  
團體에서 課長級 以上으로 5年 以上 勤務한 經歷이 있는 者
- 다. 委員會 所管分野 博士學位 所持者
- 라. 其他의 資格要件에 相當한 經歷과 議會制度에 관한 專門知識이 豊富하다고  
認定되는 者
- 마. 가, 나, 다, 라항에 該當되는 者로서 滿 55세 以下인 者

第3條(協議의 語次) ① 專門委員의 導入, 導出은 議회의 事前協議가 있어야 한다.  
단, 協議를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.

② 選任委員會에서는 委員 候補者가 第2條의 資格標準에 適合한지 選任標準을  
찾아볼 後 그 結果를 書面으로 議회의 에게 提出한다.

附

則

① (施行期) 이 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.